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의견표명)

■ 사례 1

□ **민원 제목** : 봉양읍 미당2리 00정사 위 00마을 상수도 가압장 설치 요청

□ 신청취지

○ 봉양읍 미당2리 00정사 위 00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은 상수도 수압이 낮아 생활에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있음.

□ 피신청인 주장

○ 봉양읍 미당2리 00정사 위 00마을 진입로는 경사가 심하여 마을입구 미당리 00-00번지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이 설치한 상수도 가압장이 있었으나, 근래 가구수가 증가하여 상수도 수압이 현저히 낮아져 상수도 이용시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00정사 위 00마을 11가구에 상수도 가압장의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사항임.

- 이장 책임하에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함.
- 가압시설 설치시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서 사전 준비함.

□ 사실관계

○ 2022.09.27. 00정사 입구 민원현장에서 미당리 이장 엄00, 수도사업소 급수팀 직원 3명과 민원청취와 함께 협의함.

○ 00정사 위 00마을은 수년전 택지조성으로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위성사진에는 5~6가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현재는 11가구가 상주하고 있으며 현재도 주택이 신축중으로 점차 가구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 지방상수도 관로로부터 약 50~60M 위 아릅마을이 조성되었으며 조성시 미당리 00-00번지에 거주하는 주민(한00)이 마을 입구에 가압장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수압이 낮아 11가구의 주민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있음.

○ 가압장 설치시, 50mm PE 수도관을 매설하여 11가구가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없으나 가구수가 증가하여 가압장 용량이 대폭 증가시 수도관 압력에 무리가 있어 주철관으로 교체가 필요한 상황임.

○ 현장에 참석한 수도사업소 담당직원의 의견은 현재 마을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가압시설의 수압을 현재 7.5kg/㎤에서 9.0kg/㎤ 까지 상향 조치하면 00마을 11가구에 공급되는 각 가정에 공급되는 상수도 수압은 2.5kg/㎤ 이상으로 높아져 상수도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임.

○ 그러나, 00마을에 가구수가 계속 증가하면 상수도 가압장 용량 증가 등의 가압시설 개선과 수도관 교체 등이 필요한 상황임.

□ 관계 법령 등

○ 민원지역은 개인이 개발하여 택지를 공급한 지역으로서 가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압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가압장 재설치는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12조 제5항 규정에 의해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임.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관리) 제5항
-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 판단 및 결론

○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2022.09.30. 고충민원 심의후 “민원지역은 귀농·귀촌인구의 유입으로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수도 수압이 낮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마을입구에 있는 상수도 가압장의 급수 압력 상향 조치 등으로 00마을

에 거주하고 있는 11가구 주민들이 상수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한 조치와, 향후 가구수가 증가하여 새로운 상수도 가압장이 필요시에는 관련 법과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여 조치” 하여 줄 것을 관련부서에 의견표명 한 결과,

■ 단기 대책 : 현재의 가압시설 수압 조정을 통한 민원해결.

○ 현재 주택 최저 수압 : $1.3\text{kg}/\text{cm}^2$ (법적기준 이하임)

○ 기존가압장의 수압조정 : 현재 $7.5\text{kg}/\text{cm}^2$ 에서 $9.0\text{kg}/\text{cm}^2$ 으로 상향 조정

※ 관로상태(PE 50mm) 등 변수 조건에 따라 가압결과가 상이하게 도출되므로 현장에서 시행함.

○ 현장 수압조정 결과 : 최고 위치 주택 수압측정 결과 $2.5\text{kg}/\text{cm}^2 \sim 3.0\text{kg}/\text{cm}^2$ 이상으로(적정) 주민 만족함.



수압측정 : 조정 전 $1.5\text{kg}/\text{cm}^2$

수압측정 : 조정 후 $3.5\text{kg}/\text{cm}^2$

■ 중기 대책 : 향후 수압 저하시 미당리 지역의 개발 수요 증가에 대비 급수구역 확대 되도록 적극적인 사업검토 예정임.

○ 전원형 주거지역이 형성되는 곳은 시민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급수구역 확대되도록 적극행정 추진할 계획이라는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합의)

■ 사례 2

□ **민원 제목** : 송학면 도화리 000-0번지 고추 가공 공장 및 냉동 곡물 창고 신축 절대 반대 민원

□ 신청취지

○ 송학면 도화2리 00 마을 중심에 기존 가공 공장 및 냉동 곡물창고 2동이 있으나 근래 동일한 용도의 곡물창고를 추가 신축하려고 함.

□ 피신청인 주장

○ 송학면 도화2리 00 마을은 예부터 효자마을, 장수마을, 양반마을 등으로 불리며 봄이면 복사꽃이 만발하는 살기 좋은 마을이었으나, 도화리 000-0번지 마을 중심에 고추 가공 공장 및 냉동 곡물창고 2동이 가동되어 마을주민들은 생활에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있음.

○ 그러나, 최근 기존의 곡물창고를 운영하는 건축주는 도화리 000-0번지에 동일한 용도의 곡물창고를 신축하려고 하여, 마을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절대 반대하는 민원사항임.

① 조망권 훼손

- 신축하려는 창고는 도화2리 마을회관 바로 앞에 위치하고 마을 중심에 있어 조망권을 훼손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음.

② 소음 분진 발생

- 공사 시 통행하는 대형차량과 장비로 인하여 소음·분진이 발생하여 주민 불편사항 가중이 예상됨.

③ 좁은 마을안길에 곡물창고를 통행하는 대형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

④ 곡물창고가 마을중심에 위치하여 마을 발전 가능성 저해

- 도화2리 00마을은 근래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되어 귀농·귀촌 인구 유입으로 마을이 발전하고 있으나 마을 중심에 대형 창고가 있어 지가 하락 등으로 마을 발전에 저해가 예상됨.

⑤ 기존 곡물창고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신축 곡물창고 지붕에도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예상되어 태양광 발전소로 인하여 주민건강과 환경피해의 우려가 있음.

□ 사실관계

○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2023.02.16. 도화리 000-0번지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건축주(김00)와 1인, 송학면 지역진흥팀장(김00)와 주무관 1명, 도화2리 박00 부녀회장님의 마을주민 다수 등과 현장확인과 함께 도화2리 마을회관에서 민원협의함.

○ 현장에서 만난 건축주는 기존 공장과 같이 고추 꼭지 제거 등의 단순 1차 공정의 목적으로 신축할 예정이며, 대부분 마을주민들이 작업에 참여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를 할 것으로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의 불편사항이 없어 주민피해가 없을것이라고 주장함.

○ 현장 확인 결과 건축 예정지는 경사가 있으나 건축물 높이로 인하여 공장 신축시 마을회관 거실에서 마을입구를 보았을 때 시야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됨.

□ 관계 법령 등

○ 건축예정지 도화리 000-0번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지목은 전(田)이며, 건축법 및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건축신고는 수리된 상태임.

□ 판단 및 결론

○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진정인외 마을주민들께서 송학면 도화리 000-0번지 일원의 고추 가공 공장 및 냉동 곡물 창고로 인하여 피해와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송학면 도화리 000-0번지 신축공사 이전에 건축주와 주민들간 충분한 협의로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송학면 관련부서에 권고하였으며,

○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도화2리 마을회관에서 참석한 마을주민, 건축주, 송학면 담당자 등은 도화2리 마을회관에서 민원내용 청취와 함께 협의를 하였으며, 협의시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주관하고 적극 중재하여 건축주(김정하)가 마을주민에게 “송학면 도화리 000-0번지 건축물 위 태양광 설치 금지” 등의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6가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증거로 **확인서를 송학면에 제출하였**으며, 민원인외 마을주민 38인께서 취하원을 제천시에 제출하여 **민원은 합의 조정 종결처리 되었음.**

※ 마을주민과 건축주간 합의한 확인서

1. ‘송학면 도화리 801-6번지’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 설치 금지
2. 마을 안길 통행 확보
3. 해당 필지 지반 4m 절토후 건축물 착공(마을회관 창문 아래 선 넘지 않도록)
4. 대지 경계 조경석 설치 후 조경
5. 마을회관에 편입된 기존 옹벽 유지
6. 소음 및 분진 저감을 위한 노력

〈송학면 도화리 000-0번지 건축 전〉



〈송학면 도화리 000-0번지 건축 후〉



